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과실치상·산업안전보건법위반

[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. 9. 30. 2013고단954,2013고단1469(병합),2013고단1727(병합)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이수천(기소, 공판)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권오성 외 5인

【주문】

피고인 1, 5를 각 징역 1년 6월에, 피고인 2, 3, 4를 각 금고 2년에, 피고인 6, 7, 8, 9, 10을 각 금고 1년에, 피고인 11을 벌금 10,000,000원에, 피고인 12 주식회사, 피고인 13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,0000,000원에 각 처한다.

피고인 1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다만, 피고인 1, 2, 3, 4, 5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, 피고인 6, 7, 8, 9, 10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 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 11, 피고인 12 주식회사, 피고인 13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2 주식회사에 대한 2013. 3. 14.자 폭발사고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무죄.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[이유]

]

[이유]

1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